

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보상등기업무 법무사등 선정계획 공고

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취득 토지의 소유권 이전, 공탁 등 부동산등기 관련 제반 업무(이하 “보상등기업무”)를 위임할 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공익사업 및 법무사등 선정 개요

- 가. 사업의 명칭 :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
- 나. 사업시행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
- 다. 위 치 :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일원
- 라. 지구개요 : 면적 129,726㎡, 175필지(소유자 148인)
- 마. 선정인원 : 1인
- 바. 거리산정을 위한 기준장소 :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

2. 신청자격

「부동산등기법」 제2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법무사등”이라 한다)

- 가. 변호사(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, 법무조합을 포함한다)
- 나. 법무사(법무사법인, 법무사법인(유한)을 포함한다)

3. 법무사등의 신청자격 및 위임제한

신청자격을 갖춘 자 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자격이 제한되며, 공고일 이후 다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본 공고에 따른 신청 및 선정을 취소합니다.

- 가.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
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퇴직한 자가 「변호사법」, 「법무사법」에 따른

구성원인 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, 법무조합, 법무사법인, 법무사법인(유한)을 포함한다.

②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퇴직한 자가 법무법인 등의 담당 법무사등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
나. 해당 사업지구 관할 지역본부에서 공개선정의 방법으로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수가 100인 이상인 다른 사업지구의 보상등기업무를 수행중인 자
(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 또는 2년 중 빠른 날이 경과된 경우는 제외)

다. 해당 사업지구 관할 지역본부에서 공개선정의 방법으로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수가 100인 이상인 사업지구의 보상등기업무를 수행할 법무사등으로 선정된 자 (선정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는 제외)

라. 공고일 직전 2년 동안 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임한 보상등기업무와 준공등기업무의 수수료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

마. 업무정지 또는 LH공사의 법무사무 위임제한 제재처분을 받는 자

① 공고일 현재 업무가 정지되었거나, 업무정지가 예고된 자

② 공개선정 신청 이후 업무가 정지되거나, 업무정지가 예고되는 자

③ 업무해태 등 불성실법무사등으로 간주되어 LH공사로부터 신규 법무사무 위임제한 처분을 받는 자

4. 신청방법·신청기간·신청 시 제출서류

가. 신청기간 : 2026. 08. 24.(월) 10:00 ~ 2026. 09. 02.(수) 17:00

[토·일요일 및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]

나. 신청장소 :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보상2팀

[주소]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길 33, 디테크타워 A동 2층

다. 신청방법 : 방문접수 (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)

라. 제출서류

1) 법무사등 선정 제안서 1부.

2) 기재사항에 관한 증빙서류 1식.

3) 변호사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

또는 법무사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.

* 제출서류는 붙임 '제안서 작성방법'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1책으로 편철하여 제출하며, 공사에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5. 선정방법 및 선정결과 발표

가. 계량평가(80점)

계량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인원의 2배 수 이내로 1차 선정

- 동점자는 계량평가 항목 순서에 따른 항목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
- 항목별 점수까지 같은 경우 해당자 전원 선정

* 계량평가 항목 : 수입형평성, 수행실적, 성실성, 사후평가, 이용편의성 항목

나. 제안서평가(20점)

1차 선정자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업무수행능력 평가

다. 법무사등 선정

1차 선정된 법무사등의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법무사등 선정

라. 선정결과 공고

- 2026. 09. 16.(수) 15:00 이후 공사 홈페이지

* 한국토지주택공사 - 새소식 - 공모안내(인터넷 주소 <https://lh.or.kr/>)

* 계약체결 일정은 선정된 법무사등에 별도 안내 예정

6. 선정법무사등의 계약기간

보상등기업무 수입계약기간은 위임계약 체결일부터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지구 내 편입부동산의 보상등기업무 완료일로 합니다.

7. 수수료 지급기준

법무사등의 수수료는 법무사무의 종류에 따라 선정된 법무사등이 제안한 수수료로 정합니다.

8. 신청 시 유의사항

가.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법무사등으로 보아 제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2년 이하 범위에서 공사의 보상등기업무 법무사등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
나. 본 공고에 따라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법무사등과 선정을 취소 또는

계약을 해지하여 법무사등을 재선정하는 경우에는 본 공고에 따른 법무사등 선정에서 탈락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우선대상자가 우리 공사의 타 사업지구에서 100인 이상 보상등기 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다음 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.

- 다. 2인 이상의 법무사등이 수행한 사업지구에 대하여 3. 신청자격의 제한 나호 및 다호의 토지소유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총 토지소유자 수를 수행 법무사등의 수로 나눈 값을 적용합니다.
- 라. 보상등기업무 수행 중 법무사등이 변경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3. 신청자격의 제한 나호 및 다호의 토지소유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변경 시 잔여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- 마. 본 공고에 따른 보상등기업무를 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의 처리를 지체하거나, 위임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법무사등으로 보아 제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2년 이하 범위에서 공사의 보상등기업무 법무사등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- 바. 본 공고에 따른 신청자가 선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나호에 따른 우선 대상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공고없이 수의로 법무사등을 선정하여 위임합니다.
- 사.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정으로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선정된 법무사등은 그 선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아. 그 밖의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보상2팀 (☎ 02-6177-4525)

2026년 8월 24일

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장